<화물운송자격시험응시자용 가이드북: '09. 7. 8 수정.보완>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규

2009. 7. 8(수)

교통안전공단

□ 이 가이드북은 화물운송자격시험응시자를 위하여 교통 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시험용 참고자료이며, '04. 5.29(토) 최초 인터넷게시 이후 전반적 또는 부분 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게시하는 것입니다. □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2009. 7. 8(수) 교통안전공단 -

# < 목 차 >

제I상	上도.	<b>과동</b> 업
	제1절	총칙 1
	제2절	신호기 및 안전표지
	제3절	차마의 통행
	제4절	자동차등의 속도13
	제5절	서행 및 일시정지 등14
	제6절	교차로 통행방법15
	제7절	통행의 우선순위16
	제8절	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17
	제9절	운전면허18
제2장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1절	처벌의 특례······26
	제2절	중대 법규위반 10개 항목 사고의 개요 28
제3장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절	총칙42
	제2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44
	제3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56
	제4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58
	제5절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교육59
	제6절	사업자단체 62
	제7절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63
	제8절	보칙 및 벌칙64

제4장	자동:	차관리법	
	제1절	총칙	68
	제2절	자동차의 등록	69
	제3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73
	제4절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73
	제5절	자동차의 검사	75
제5장	도로	법	
	제1절	총칙	79
	제2절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81
제6장	대기	환경보전법	
	제1절	총칙	84
	제2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84

# 제1장 도로교통법

# 제1절 총칙

### 1. 정의(법 제2조)

- 가.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 나.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다.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라.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 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마.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 바.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 사.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아.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
- 자. "교차로"라 함은 +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 차.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 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카.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 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 는 장치를 말한다.
- 타.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 파.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하.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 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거.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너.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더. "앞지르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러. "일시정지"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머.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 2. 도로의 개념

"도로"라 함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도로를 말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다.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 3. 차와 자동차의 구분

가. 자동차와 차의 구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함)은 차와 자동차의 개념을 달리 규정한다. 이는 도로상에서의 운전과 그로 인한 단속, 행정처분, 사고처리 등의 한계를 위해서이다.

#### 나. 차 (법 제2조 제16호)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 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 1) 전동차기차 등 궤도차, 항공기, 선박, 케이블 카, 소아용의 자전거(예: 세발자전거), 유모차, 그리고 장애인용 휠체어 등은 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는 사람의 힘으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가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에는 차에 해당하고, 손수레운전자를 다른 차량이 충격하였을 때는 보행자로 본다.

#### 다. 자동차 (법 제2조 제17호)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천공기)를 말한다.

#### 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를 말한다.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사용신고의 의무가 없으며 또한 등록번호판도 없다.

# 제2절 신호기 및 안전표지

#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시행규칙 별표 2)

구 분	신호의 종류	신 호 의 뜻
차 량 신호등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u> </u>		2.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황색의 등화	책임을 진다.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 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구 분	신호의 종류	신 호 의 뜻
·		
차 량	황색의 등화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
신호등		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
		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녹색화살표시의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
	적색등화의 점멸	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
		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성격등와의 검실	진행할 수 있다.
	녹색화살표시의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등화(하향)	
	적색×표 표시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등화	
	적색×표 표시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
		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
	등화의 점멸	하여야 한다.
>	녹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보 행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
신호등	, , , , , , , ,	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적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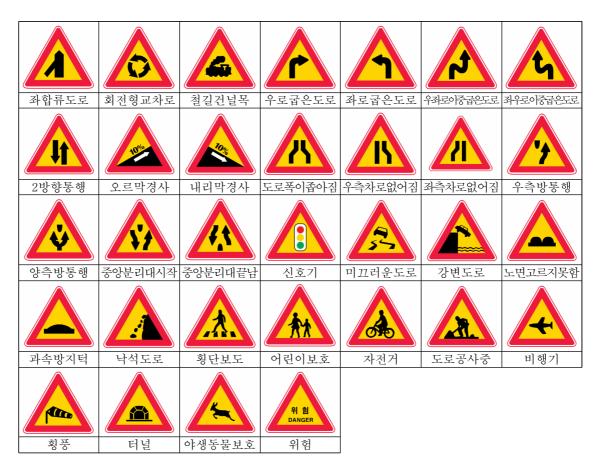
# 2. 교통안전표지의 종류(시행규칙 8조)

교통안전표지란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와 보조표지, 주의·규제·지시의 내용을 도로바닥에 표시하는 문자·기호·선 등의 노면표시를 말한다. 각종 교통안전표지에는 다음의 '가' 내지 '마'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가.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나.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다. 지시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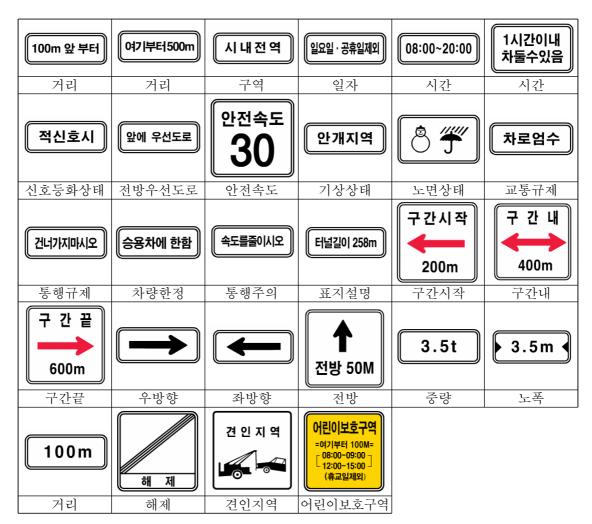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 우에 도로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라.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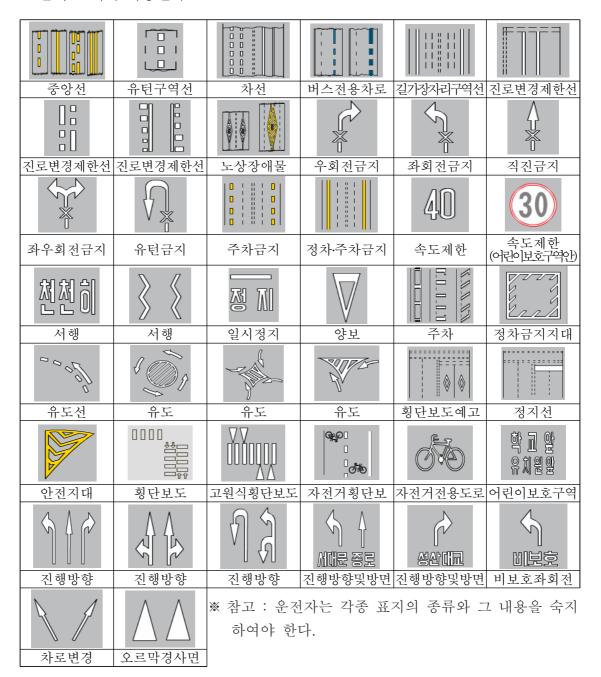


#### 마. 노면표시

- 1)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 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 2)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각종 선에서 점선은 허용, 실선은 제한, 복선은 의미의 강조

를 나타낸다.

3) 노면표시의 기본색상 중 백색은 동일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황색은 반대방향의 교통류분리 또는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청색은 지정방향의 교통류분리 표시에 사용된다.



# 제3절 차마의 통행

# 1.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시행규칙 별표 9)

도 로		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工 	구분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				
		2차로	자동차				
	편도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				
	4차로	3시고	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고		4차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				
속		1711	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				
도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				
로		1.12	자동차				
외	편도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				
의	3차로		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도		3차로	ㅇ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				
로			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				
	편도 2차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편도	편도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				
				3시포	차로		
고		4차로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속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도	편도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로	원고 3차로	2/7/도	의 주행차로				
	3사도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ッ시도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2차로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ı '					

# 2.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한 통행방법

- 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법 제13조 1항)
- 나. '가'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 좌측 및 우측부분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법 제13조 2항)

- 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3항)
- 라. 차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법 제13조 4항)
  -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자 하는 경우.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마.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법 제13조 5항)
- 바.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시행규칙 별표 9)
- 사.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규칙 별표 9)
- 아. "1.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자. "1.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 차. "1.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
- 4)「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동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감염성폐기물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7) 「원자력법」제2조제5호 및「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 8)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과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9) 「농약관리법」제2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른 유독성원제
- 카. 좌회전 차로가 2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 타.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파. 안전거리확보 등(법 제19조)
  -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 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를 확보하여야 한다.(법 제19조 1항)
  -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9조 2항)
  -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9조 3항)

#### 하. 진로양보의무(법 제20조)

- 1)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법 제20조1항)
- 2)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법 제20조 2항)

# 3. 운행상의 안전기준(시행령 제22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 나.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 1)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 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2)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 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3)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4.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법 제39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6조)

-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적재 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 바.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2) 분할할 수 없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 사.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

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 제4절 자동차등의 속도

# 1. 도로별 차로수별 속도(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도로 구분			최고속도	최저속도
일반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제한
도로	편도 1차로		60km/h	없음
	히사	무든	●100km/h ●80km/h(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험물운반자동차)	50km/h
고속도로		중부고속 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110km/h ●90km/h(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험물운반자동차)	60km/h
			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최고속도·최저속도를 지정·고시한 경우임	인정하여 그
	편도 1차로		80km/h	40km/h
자동차 전용도로		용도로	90km/h	30km/h

# 2. 이상 기후 시의 운행 속도

이상기후 상태	운행속도
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② 눈이 20mm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
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경우 ②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③ 눈이 20mm이상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

# 제5절 서행 및 일시정지 등

구분	내 용	이행해야 할 장소
서행	•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서행할 때>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	①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할 때 각각 서행(법 제25조제1~2항)
	하는 것을 의미(위험	②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진입 시 교
	예상한 상황적 대비)	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는 서행(법 제26조제2항)
		③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
		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법 제27조제4항)
		<서행할 곳 : 법 제31조제1항>
		①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서행
		②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서행
		③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서행
		④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서행
12.2		⑤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정지	으로 그 바퀴를 완전	때 일단정지(법 제18조제3항)
	히 멈추어야 하는 행	
	위자체에 대한 의미	
정기	(운행 순간정지) • 자동차가 와저히 머	□황색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0/1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시행규칙 제
	의 속도가 0km/h인	
		②적색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
	지상태의 이행	전에 정지(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2)
일시	• 반드시 차가 멈추어	①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외의 곳을 출입하
정지	야 하되, 얼마간의	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법 제13조
	시간동안 정지상태를	
		②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 일시정지(법 제24조
	상황의 의미(정지상	
	황의 일시적 전개)	③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 일시정지(법 제 27조제1항)
		④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시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
		행하거나 일시정지(법 제28조제3항)
		⑤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
		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법 제29조제4항)
		⑥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 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법
		제31조제2항)
		⑦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시정지 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법 제31조제2항)

구분	내 용	이행해야 할 장소
일시	• 반드시 차가 멈추어	⑧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도로에서 앉
정지	야 하되, 얼마간의	아 있거나 서 있는 때 또는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시간동안 정지상태를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앞을 보
	유지해야 하는 교통	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도견을 동
	상황의 의미(정지상	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또는 지하도·육교 등
	황의 일시적 전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
		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법 제49조제1항제2호)
		⑨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적색등화가 점멸하
		는 곳의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시행규
		칙 제6조제2항, 별표2)

# 제6절 교차로 통행방법

- 1.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방법(법 25조)
  - 가. 좌회전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
  - 나. 우회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한다.
  - 다. 좌·우회전하기 위하여 앞차가 신호를 한 때에는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 는 안된다.

# 2. 노폭이 대등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우선순위

-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
- 나. 동시진입차간의 통행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법 제26조제2~4항)
  - 1)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 2) 직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직진: 좌회전)
  - 3)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우회전 : 좌회전)
- 다. 선진입 적용은 속도에 비례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이므로 단순히 교차로 진입거리가 길다하여 선진입을 확정해서는 아니되고, 우선 일시정지·서행여부· 좌우주시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통행우선권을 결정하여야 한다.
- 라. 따라서 노폭이 대등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관계규정(법 제16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1조)을 종합하여 다음의 단계로 통행하여야 한다.
  - 첫째, 교차로 진입전(교차로 정지선상)에 일시정지(시야장애가 있거나 교통이 빈 번한 경우) 또는 서행(여타 교차로)하고

둘째, 앞쪽, 왼쪽 · 오른쪽을 주시하며

셋째, 통행우선권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선진입 우선, ○동시진입시 : 통행 우선 순위 차(긴급자동차) 우선,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좁은 도로에서 진 입하는 차보다 우선,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좌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보다 우선, 직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우회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 제7절 통행의 우선순위

### 1.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법 16조)

차마 서로간의 통행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 가. 긴급자동차 (최우선 통행권을 갖는다)
- 나.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최고속도 순서)
- 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 2. 긴급자동차의 특례(법 제29~30조)

- 가.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나. 정지하여야 할 곳에서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법 제 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긴급자동차 본래의 사용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인정되며, 법제30조에서 동법제21조(앞지르기 방법등)에 관한 규정은 인용하지 않음에 주의

# 3. 긴급자동차 접근시의 피양(법 29조)

- 가. 교차로 또는 그 부근 :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피양이 긴급자동차 통행 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 나. 교차로 · 교차로 부근 이외의 곳 :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 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피양이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 4. 비탈진 도로 또는 좁은 도로에서의 우선순위(법 16조 제2항)

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나.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사람을 태운 자동차와 빈자동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 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제8절 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

### 1. 자동차의 정비

- 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40조)
- 나. 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0조4항)
  -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 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2. 자동차의 점검(법 제41조)

- 가.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 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 나. 경찰공무원은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후에 운전을 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구간·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 지방경찰청장은 '나'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가'항 내지 '다'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9절 운전면허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시행규칙 제53조관련 별표18)

운전	 면허	스 카윈 - 사 - 시
종별	구 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대형면허	<ul> <li>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li> <li>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탈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li> <li>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li> <li>원동기장치자전거</li> </ul>
	보통면허	<ul> <li>- 승용자동차</li> <li>-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li> <li>-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li> <li>-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li> <li>-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li> <li>- 원동기장치자전거</li> </ul>
	소형면허	<ul><li>3륜화물자동차</li><li>3륜승용자동차</li><li>원동기장치자전거</li></ul>
	특수면허	<ul><li>트레일러</li><li>레커</li><li>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li></ul>
제2종	보통면허	<ul><li>-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li><li>-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li><li>- 원동기장치자전거</li></ul>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총 배기량 125cc 초과, 측차부를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ul><li> 승용자동차</li><li>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li><li>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li></ul>
	제2종보통	<ul><li>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li><li>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li></ul>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동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자동차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 승차 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 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4.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 2. 운전의 제한(법 제80조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3. 운전면허취득 응시기간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가" 내지 "라"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법 제82조 제2항)

- 가. 무면허운전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 나. 주취운전금지 또는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그 밖의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때의 운전금지 규정,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 다. 무면허운전금지, 주취운전금지, 과로·질병·약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의 운전금지,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구호조치 및 사고발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라. 주취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 마. 다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1) 주취운전금지 또는 경찰공무원의 주취운전 여부측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때
  - 2)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 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바. '가' 내지 '마'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 4.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감경(시행규칙 별표 28)

#### 가. 감경사유

-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가) 혈중 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라)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2)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운전이 가족 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 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가)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다)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라)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나.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그 밖의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 다. 벌점기준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시행규칙 별표 28)

	구 분	벌점	내 용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인적 피해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비고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워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	적 용 법 조	벌	내 용
사 항	(도로교통법)	점	
교통사고 야 기 시 조 치 불 이 행	제54조 제1항	30 60	1.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3)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범 칙 행 위	벌점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 과한 때	110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
o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 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 을 받지 아니한 때	4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30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5

범 칙 행 위	벌점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

# 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시행령 별표 7)

범 칙 행 위	차종특	별 범칙	금액(	만원)
범 칙 행 위	승합	승용	이륜	기타
○속도위반(40km/h 초과)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10	9	6	_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통행방해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숙차인원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7	6	4	3
○통행금지·제한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5	4	3	2

וון בו בו מו	차종병	별 범칙	금액(	만원)
범 칙 행 위		승용	이륜	기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위반				
○ 정차·주차금지 위반				
○ 주차금지 위반				
○ 정차·주차방법 위반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적재제한 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				
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포함)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5	4	3	2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물님으도 소금 발생생위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 식재임 중식업 중군 영영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어딘이동악버스 특별모모귀빈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시청자도 중행되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 고속도로·사동시전공도로 공헌·뉴턴·무선위헌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고속도로 게 6세 년 6 조조 6세 기세 1세 1년 1				
° 고속도로 · 전용대단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혼잡완화 조치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				
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				
○속도위반(20km/h 이하)				
○ 진로변경방법위반				
○ 급제동금지위반				
○ 끼어들기금지위반				
○ 서행의무위반				
○ 일시정지위반	3	3	2	1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ㅇ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ㅇ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통학버스				
와 유사한 도장ㆍ표지 금지위반				
○ 통행우선순위위반				
○ 최저속도위반	2	2	1	1
○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 진로양보의무불이행				

범 칙	행 위	차종특	별 범칙	금액(	만원)
김 식	98 TI	승합	승용	이륜	기타
○등화점등・조작불이행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 :	운전		0	1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ㅎ	i 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승	2	2	1	1
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특별준수사항 위반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 미필		4			
	3월 이하		;	3	
3월 초과 6월 이하		4			
○ 적성검사기간 경과	6월 초과 9월 이하	5			
9월 초과			6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3	
○면허증 반납불이행			•	J	

주 1. 승합(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2. 승용(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 이륜(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 기타(자전거 등):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1절 처벌의 특례

### 1. 특례의 적용 및 배제

- 가. 특례의 적용(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1)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어지는 예외단서 11개 항목 사고는 아래 "나. 특례의 배제" 참조).
- 나. 특례의 배제(법 제3조 제2항의 예외단서)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법 제3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다.

- 1) 신호 · 지시위반사고
-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 3) 속도위반(20km/h 초과) 과속사고
- 4)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 7) 무면허운전사고

- 8) 주취운전 · 약물복용운전 사고
- 9) 보도침범 · 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시행:'09.12.22)

### 2. 처벌의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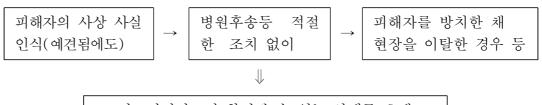
#### 가. 사망사고

- 1)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피해자가 사고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상의 구분일 뿐 72시간이 경과된 이후라도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인 때에는 사고운전자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 2) 사망사고는 그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사고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규정하여 형법 제268조로 의율하여 처벌한다.

#### 나. 도주사고

- 1)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운전은 특히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만으로 규율하기에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가중처벌과 예방적 효과를 위하여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가중한다.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도주(뺑소니)사고의 성립요건



#### 사고야기자로써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

#### 다. 도주사고 적용사례

- 1)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가버린 경우
- 2)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 도주한 경우
- 3) 사고현장에 있었어도 사고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진술.신고한 경우
- 4) 부상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5)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체 안치 후송 등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 6)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계속치료 받을 수 있는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 7)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신고한 경우

#### 라. 도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 피해자가 부상 사실이 없거나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치 않는 경우
- 2) 가해자 및 피해자 일행 또는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 주고 가버린 경우
- 3) 교통사고 가해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 타인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를 후송조 치한 경우
- 4) 교통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도저히 정지할 수 없어 일부 진행한 후 정지하고 되 돌아와 조치한 경우
- 5)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헤어진 경우

# 제2절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개요

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의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중대 법규위반 교통 사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신호.지시위반 사고

#### 가. 정의

신호 및 지시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내용 중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 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나. 신호위반의 종류

- 1) 사전출발 신호위반
- 2) 주의(황색)신호에 무리한 진입
- 3) 신호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 다. 황색주의신호의 개념

1) 황색주의신호 기본 3초

큰 교차로는 다소연장하나 6초 이상의 황색신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가 나오기 전에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 2) 선 · 후신호 진행차량의 만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3초여유)
- 3) 대부분 선신호차량 신호위반, 단 후신호 논스톱 사전진입시는 예외
- 4) 초당거리 역산 신호위반 입증

#### 라. 신호기의 적용범위

신호기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교차로나 횡단보도에만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대 적용될 수 있다.

- 1) 신호기의 직접영향 지역
- 2) 신호기의 지주 위치 내의 지역
- 3) 대향차선에 유턴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신호기 적용 유턴 허용지점으로까지 확대 적용
- 4) 대향차량이나 피해자가 신호기의 내용을 의식, 신호상황에 따라 진행중인 경우
- 마. 교통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수신호에 대한 법률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93. 7. 1.)으로 교통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수신호 사고시 신호위반 적용

바.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 좌회전중 사고

사고의 대형화 예방측면과 신호의 예외 배제로 신호위반 적용

- 사. 지시위반 : 규제표지 중 통행금지표지, 진입금지표지, 일시정지표지에 대해 적용
  - 통행금지표지(201), 자동차통행금지표지(202), 화물자동차통행금지표지(203), 승합자동차통행금지표지(204),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205),

자동차·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206), 경운기·트랙터및손수레통행금지표지(207), 자전거통행금지표지(210), 진입금지표지(211), 일시정지표지(227)

#### 아. 신호 · 지시위반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 소 적 요 건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 로나 횡단보도 · 경찰관 등의 수신호 · 지시표지판(규제표지 중 통행 금지·진입금지·일시정지표 지)이 설치된 구역내	·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신호기의 고장이나 황색, 적색 점멸신호등의 경우 · 기타 지시표지판(규제표지 중 통행금지 · 진입금지 · 일시정지 표지 제외)이 설치된 구역
피해자적 요 건	· 신호 · 지시위반 차량에 충돌되 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 대물피해만 입는 경우는 공소 권 없음 처리
운전자의 과 실	· 고의적 과실 · 의도적 과실 · 부주의에 의한 과실	· 불가항력적 과실 · 만부득이한 과실 · 교통상 적절한 행위는 예외
시설물의 설치요건	·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 수가 설치한 신호기나 안전표지	· 아파트단지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

# 2. 중앙선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 가. 중앙선의 정의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도 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설치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 나. 중앙선 침범의 한계

사고의 참혹성과 예방목적상 차체의 일부라도 걸치면 중앙선 침범 적용

#### 다.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

- 1) 고의 또는 의도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
  - 좌측도로나 건물 등으로 가기 위해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U턴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걸친 상태로 계속 진행한 경우
  -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다시 진행차로로 들어오는 경우

-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진행 차로로 들어오는 경우(대향차의 차량 아닌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도 중앙선 침범 적용)
-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회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추월 중 발생한 경우
- 2) 현저한 부주의로 중앙선 침범 이전에 선행된 중대한 과실사고
  - 커브길 과속운행으로 중앙선 침범한 사고
  - 빗길에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미끄러지며 중앙선 침범한 사고 단. 제한속력 내 운행 중 미끄러지며 발생한 경우는 중앙선침범 적용 불가
  - 기타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중앙선 침범사고
    - (예: 졸다가 뒤늦게 급제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차내 잡담 등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역주행 자전거 충돌 사고시 자전거는 중앙선 침범)
-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U턴 또는 후진중 사고 발생시 중앙선 침범 적용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U턴 또는 후진중 발생한 사고
  - 예외사항 : 긴급자동차, 도로보수 유지 작업차, 사고응급조치 작업차

### 라. 중앙선 침범 적용

특례법상 10항목 사고로 형사입건	공소권 없는 사고로 처리
· 고의적 U턴, 회전중 중앙선 침범사고	· 불가항력적 중앙선 침범
· 의도적 U턴, 회전중 중앙선 침범사고	· 만부득이한 중앙선 침범
•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	<ul> <li>사고피양 급제동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li> </ul>
- 커브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	- 위험 회피로 인한 중앙선 침범
- 빗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	- 충격에 의한 중앙선 침범
- 졸다가 뒤늦게 급제동으로 중앙선 침범	- 빙판등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
- 차내 잡담등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 교차로 좌회전중 일부 중앙선 침범
- 기타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 마. 중앙선 침범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 황색실선이나 점선의 중앙선이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 건	설치되어 있는 도로	· 아파트 단지내나 군부대내의
	·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사설 중앙선
	서의 횡단·유턴·후진	· 일반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피해자적	· 중앙선 침범 차량에 충돌되어	· 대물피해만 입는 경우는 공소
요 건	인적피해를 입는 경우	권 없음 처리
	·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서의 횡단·유턴·후진차량에 충돌	
	되어 인적피해를 입는 경우	
운전자의	· 고의적 과실	· 불가항력적 과실
과 실	· 의도적 과실	· 만부득이한 과실
	•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시설물의	·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 지방	· 아파트단지등 특정구역 내부의
설치요건	경찰청장이 설치한 중앙선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

#### 바.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 1) 불가항력적 중앙선 침범사고
  - 뒤차의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추돌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내리막길 주행중 브레이크 파열 등 정비 불량으로 중앙선 침범한 사고
- 2) 사고피양 등 만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사고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 앞차의 정지를 보고 추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보행자를 피양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3)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
  -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었을 경우 중앙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 눈 또는 흙더미에 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앙부분을 넘어서 발생 한 사고
  - 전반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중앙선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한 도로에서 중앙 부분을 넘어서 발생한 사고
  - 공사장 등에서 임시로 차선규제봉 또는 오뚜기 등 설치물을 넘어 사고 발생 된 경우
  -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반대편 도로의 노견을 충돌한 자피사고

- 학교, 군부대, 아파트 등 단지내 사설 중앙선 침범사고
-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곳에서 회전하다가 사고 야기된 경우
- 중앙선이 없는 굽은 도로에서 중앙부분을 진행중 사고 발생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한 동일방향 앞차를 충돌한 사고의 경우

## 3. 속도위반(20km/h초과) 과속사고

### 가. 과속의 개념

일반적으로 과속이란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과속이란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20km/h 초과된 경우이다.

- ※ 경찰에서 사용 중인 속도추정방법
  - ① 운전자의 진술
  - ② 스피드건
  - ③ 타코그래프(운행기록계)
  - ④ 제동흔적 등

### 나. 과속사고(20km/h초과)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요 건	·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 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 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 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 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피해자적 요 건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고 · 과속차량(20km/h초과)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는 경우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 제한속도 20km/h 이하 과속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 제한속도 20km/h 초과차량에 충돌
운전자의 실	·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과속 운행중 사고야기한 경우 1)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속도 20km/h 초과한 경우 2)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h, 4차 로 이상 도로 80km/h에서 20km/h 초과한 경우 3)속도제한표지판 설치구간에서 제 한속도 20km/h를 초과한 경우 4)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거	되어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  ·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과속하여 운행중 사고야기한 경우  ·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과속 운행중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운전자의	나, 눈이 20㎜미만 쌓일 때 최	
과 실	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	
	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5)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	
	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결	
	빙, 눈이 20mm 이상 쌓일 때 최	
	고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에	
	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6)총중량 2,000kg에 미달자동차	
	를 3배 이상의 자동차로 견인	
	하는 때 30km/h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7)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 25km	
	/h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시설물의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17조제2	· 동 안전표지 중
설치요건	항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설치	1)규제표지 226호(서행표지)
	한 안전표지 중	2)보조표지 409호(안전속도표지)
	1)규제표지 일련번호 224호(최고	3)노면표시 519~520호(서행표
	속도제한표지)	시)의 위반사고에 대하여는 과속
	2)노면표시 일련번호 517~518호	사고가 적용되지 않음
	(속도제한표시)	

#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가. 중앙선 침범, 차로변경과 앞지르기 구분

1) 중앙선침범 :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걸친 행위

2) 차로변경 : 차로를 바꿔 곧바로 진행하는 행위

3) 앞지르기 : 앞차 좌측 차로로 바꿔 진행하여 앞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나.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 앞지르기 금지장소	· 앞지르기 금지장소외 지역
요 건	1)교차로	
	2)터널 안	
	3)다리 위	
	4)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	
	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피해자적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차량 요 건 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 앞지르기방법·금지위반차량에 충돌되어 대물피해만 입은 경 우 · 불가항력적, 만부득이한 경우 앞
	지르기하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	· 불가항력, 만부득이한 경우 앞
과 실 1)병진 시 앞지르기 2)앞차의 좌회전 시 앞지르기 3)위험방지를 위한 정지·서행 시 앞지르기 4)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 기 5)실선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 1)우측 앞지르기 2)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지르기 하던중 사고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가. 철길건널목의 종류

종 별	내용
1종 건널목	차단기, 경보기 및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단기를 주 야간 계속 작동시키거나 또는 건널목 관리원이 근무하는 건널목
2종 건널목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3종 건널목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 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 철길건널목(1, 2, 3종 불문)	· 역구내 철길건널목의 경우
요 건		
피해자적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요 건	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로 대물피해만을 입은 경우
운전자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 철길건널목 신호기, 경보기 등
과 실	과실	의 고장으로 일어난 사고
	1)철길건널목직전 일시정지 불이행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2)안전미확인 통행중 사고	따르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지
	3)고장시 승객대피, 차량이동 조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치 불이행	

#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 가.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개념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횡단하였고, 신호변경이 되었더라도 미 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의 주의 촉구

### 다. 횡단보도에서 이류차(자전거,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시 결과조치

형 태	결 과	조 치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 통행중 사고	이륜차를 보행자로 볼 수 없고 제차로 간주하 여 처리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이륜차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중	보행자로 간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이륜차를 타고가다 멈추고 한발을 페달에, 한발을 노 면에 딛고 서 있던중 사고	보행자로 간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 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 횡단보도내	·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적색등화)
요 건		때의 횡단보도
피해자적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자동	·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적색등화)
요 건	차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때 횡단보도 건너던 중 사고
	경우	·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드
		러누워 있거나, 교통정리, 싸우던
		중, 택시를 잡던중 등 보행의 경우
		가 아닌 때
운전자의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정지신호(적
과 실	한 경우	색등화)에 건너던중 사고
	·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
	돌, 앞차가 밀려나가 보행자를 충	호가 변경되어 중앙선에 서 있던
	돌한 경우	중 사고
	· 보행신호(녹색등화)에 횡단보도 진	· 보행자가 주의신호(녹색등화의 점
	입, 건너던중 주의신호(녹색등화의	멸)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지 설 물 설치요건	점멸) 또는 정지신호(적색등화)가 되어 마저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놀라거나 충돌을 회피하 기 위해 도망가다 넘어져 그 보행 자를 다치게 한 경우(비접촉사고) · 도로교통법 제10조에 의거 지방경 찰청장이 설치한 횡단보도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있고 표지판	여 건너던중 정지신호(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사고  · 아파트 단지나 학교, 군부대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설치된 경우는 제외
	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횡단보 도로 간주한다.	

# 7. 무면허운전 사고

### 가. 정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이 금 지된 경우에 운전하다가 사고

### 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 1) 면허를 취득치 않고 운전하는 경우
- 2)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 3)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4)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5) 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 6) 면허종별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7)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가 적재중량 3톤을 초과함에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 8)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천공기)를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 9) 면허있는 자가 도로에서 무면허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던 중 사고야기한 경우
- 10) 군인(군속인 자)이 군면허만 취득 소지하고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 11)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지나 운전중 사고야기한 경우

- 12)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13)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 나. 무면허운전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 도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
요 건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	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특정인
	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만 출입하는 장소로 교통경찰권이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장소)	미치지 않는 장소)
피해자적	· 무면허 운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	· 대물피해만 입는 경우로 보험면
요 건	사고를 입는 경우	책으로 합의된 경우
	· 대물피해만 입는 경우도 보험면책으	
	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	
운전자의	·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치를 운전하는 경우	· 취소사유 상태이나 취소처분(통
과 실	1)면허를 취득치 않고 운전하는 경우	지) 전 운전
	2)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	
	전하는 경우	
	3)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4)면허정지 기간중에 운전하는 경우	
	5)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하는 경우	
	6)면허종별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7)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	
	고 운전하는 경우	
	8)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	
	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 8. 주취운전.약물복용운전 사고

### 가.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사고

### 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사례

- 1)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에서 운전한 때에 한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 2) 차량 전체가 주차 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다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 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 다.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

- 1) 음주하고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취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 2) 경찰서, 군부대 등 교통이 통제되는 장소에서 음주한 채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 운전이 아니다.

### 라. 주취운전 및 처벌 기준(※ 단속기관내부용, 단순참고 바람)

측 정 치	음주운전 단속시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7 % 7	형 벌	행 정 벌	형 벌	행 정 벌
0.05~0.10%	불구속 입건, 벌금	100일정지	형사입건	대물사고:100일 정지
미만				대인사고:면허취소
0.10% 이상	불구속 입건, 벌금	면허취소	형사입건	면허취소
0.16% 이상	불구속 입건, 벌금	면허취소	중상사고 : 영장청구	면허취소
			(구속수사)	
			경상사고 : 불구속입건	
0.26% 이상	불구속 입건, 벌금	면허취소	경상사고 : 영장청구	면허취소
			(구속수사)	
0.36% 이상	영장청구(구속수사)	면허취소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취소
			영장청구(구속수사)	

### 나. 음주운전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요 건	· 도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교통경찰권이 미치는 장소)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특정인만 출입하는 장소로 교통경찰권이미치지 않는 장소)
피해자적 요 건	· 음주운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 적사고를 입는 경우	·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운전자의 과 실	<ul> <li>음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정거리 운행한 때</li> <li>음주한계 수치가 0.05% 이상일 때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li> </ul>	· 음주한계 수치 0.05% 미만일 때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9.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위반 사고

### 가. 보도침범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차체의 일부 분만이라도 보도에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통행방법 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나. 일단정지와 일시정지의 개념

구 분	내 용	실 예		
일단정지	· 반드시 차마가 멈추어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 (운행의 순간적 정지)	· 길가의 주차장, 주유소 등을 출입키 위해 보도를 통행할 때		
일시정지	· 반드시 차마가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적 의미(정지상황의 일시적 전개)	·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 ·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통행할 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행할 때 · 어린이, 유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 다. 보도침범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장소적 요 건	<ul> <li>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 도내의 사고</li> <li>1)보도침범사고(13조1항)</li> <li>2)통행방법위반(13조2항)</li> </ul>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피해자적 요 건	·보도상에서 보행중 제차에 충 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보도침범 통행차량에 충돌 된 경우		
운전자의 과 실	· 고의적 과실 · 의도적 과실 ·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 불가항력적 과실 · 만부득이한 과실 · 단순 부주의에 의한 과실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시설물의 설치요건		· 학교,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 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

#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사고)

### 가. 정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 나. 개문발차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자동차적	·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 이륜, 자전거 등은 제외		
요 건	등 자동차에만 적용			
피해자적	· 탑승객이 승하차중 개문된 상	· 적재되었던 화물이 추락하여		
요 건	태로 발차하여 승객이 추락함	발생한 경우		
	으로서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 차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 차량정차 중 피해자의 과실사		
과 실	발차한 행위	고와 차량 뒤 적재함에서의 추		
		락사고의 경우		

### 다.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 사례

- 1)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 그 차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함으로써 탑승객이 추락,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2) 택시의 경우 승하차시 출입문 개폐는 승객자신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승객탑승 후 출입문을 닫기 전에 출발하여 승객이 지면으로 추락한 경우
- 3) 개문발차로 인한 승객의 낙상사고의 경우

### 라. 적용 배제 사례

- 1) 개문 당시 승객의 손이나 발이 끼어 사고 난 경우
- 2) 택시의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 자신이 출입문을 개폐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 제3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절 총칙

## 1.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	화물의 원활한 운송	○ 공공복리 증진
------------------	------------	-----------

# 2. 정의(법 제2조)

- 가.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 화물자동차의 규모별 종류 및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종류	세 부 기 준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화 물	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자동차	중형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 톤 미만인 것
	대형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1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특 수	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자동차	중형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화물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구 분	유 형	세 부 기 준
화 물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자동차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 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구 분	유 형	세 부 기 준
화 물 자동차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 송용인 것(예: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냉장·냉동차, 곡물·사료운반차 등)
특 수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자동차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예:고 소작업차, 고가사다리소방차, 오가크레인 등)

- ※ 화물자동차의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 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 자동차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 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名義)와 계산(計算)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상표 등을 포함한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 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 2)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운송 주선사업자
- 아.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시행령 제3조)

-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 하는 사업
- 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법 제3조)

-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다.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허가사항변경신고의 대상(시행령 제2조)

-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상호의 변경
  -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에 한한다.
- ※ 허가 및 변경허가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신고업무는 협회에 위탁

## 3. 결격사유(법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운임 및 요금 등(법 제5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시행령 제4조)

-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 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 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한다)
  -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한다)
- 나.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5. 운송약관(법 제6조)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시·도지사에게 위임

## 6. 운송사업자 책임 및 준수사항

법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가.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 나. "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가"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다"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 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마. 당사자 쌍방이 "라"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다" 및 "라"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7. 적재물배상보험

가.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1조의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다만, 건축폐기물·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 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량 제외
- 2)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3) 운송가맹사업자

### □ 적재물보험등의 가입범위(시행령 제9조의7)

제9조의7 (적재물보험등의 가입범위) 법 제35조(구법 제24조의8)에 따라 적재 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 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운송사업자 :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 2. 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
- 3. 운송가맹사업자 : 법 제24조의8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 나.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법 제36조)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2)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1조의13)

- 제41조의13(책임보험계약 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구 법 제24조의9)제2항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보 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 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다.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법 제37조)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 2)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 4) 제2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5)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 6) 제32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9) 그 밖에 1) 내지 8)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의 통지 등(법 제38조)
  - 1)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위임)
  - 3) 1) 및 2)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사실의 통지(시행규칙 제41조의14)

제41조의14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사실의 통지)

- ①법 제38조(구법 제24조의11)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구법 제24조의9)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은 자기와 법 제36조(구법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계약기간의 종료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제15호(구법 제50조제1항제13호의 4)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구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통지하는 내용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의 상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마.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과태료 처분(시행령 별표5)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100만원
  -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미가입 사업자별 500만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자격

- 가. 운전업무 종사자격(법 제8조)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연령 ·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가) 및 나)의 요건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시행규칙 제18조)

-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구법 제9조)제1 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운전자"라 한다)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 21세 이상일 것
  - 3.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 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2) 국토해양부장관은 1)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 3) 1) 및 2)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한다. ※ 3)항의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운송 종 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법 제4조(결격사유)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법 제23조)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 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위 "나" 결격사유 참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업무개시명령 위반)
  -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 ①법 제23조(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②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경우에 한한다.
- ③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화물우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 ④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당해 화물자동차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⑤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말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기록의 관리(법 제10조)
  -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 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2) 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는 1)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수 있다.

###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 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명단에는 당해 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 면허의 종류·취득일자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등 관련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④협회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제18조의2 제2항제2호(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협회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⑥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 합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9.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11조)

- 가.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조제3호 후단내용 :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 로서 그 기준 및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3. 해당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 · 수산물 또는 축산물
  -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 다. 기계 · 기구류 등 공산품
  - 라. 합판 · 각목 등 건축기자재
  - 마. 폭발성 · 인화성 또는 부식성 식품
-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 라.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마.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바.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 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 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자.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 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 카.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 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타.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의 준수사항 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할 수 있다.

####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21조)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화물운송질 서 확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2.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이와 인접한 특별사. 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2의2.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 의 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 유로 허가받은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의3.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 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 3. 신고한 우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우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할 것
  - 5.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
  - 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 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8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9.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10.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 포장 등을 하고 운행할 것
  - 11.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 12.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 13.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동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당해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 10. 운수종사자 준수사항(법 제12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 다.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라.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 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마.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고 운행할 것
- 2.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 11.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법 제13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수 있다(※시·도지사에게 위임)

- 가. 운송약관의 변경
- 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 다.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라.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
- 마.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12. 업무개시명령(법 제14조)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가"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13. 과징금

가. 과징금의 부과(법 제21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나. 과징금의 용도

- 1)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 2)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 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 3) 경영개선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9조) 제9조(과징금의 용도)
    - 1. 공영차고지의 설치 · 운영사업
    - 2.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 시·도지사에게 위임(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법 제19조)

-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및 5)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위임)
  - 1)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따른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 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경우
- 5) 법 제4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7) 법 제11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개선명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 이 조(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나. "가"의 11)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시행령 제6조제1항)

-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①법 제19조(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별표 1 제1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 사상의 정도 : 중상이상)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경우
  - 3. 화물자동차의 전복·추락 또는 충돌로 인한 경우
- 다. "가"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법 제24조)

- 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 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시·도지사에게 위임)
- 나. "가"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운송주선사업 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협회에 위탁)
- 다. "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 2)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4])				
항 목	항 목 허 가 기 준				
사 무 실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 다				
	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 이상(영업				
	소의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제곱미터 이상)의 민영 노외주				
	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				
	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 또는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				
자산평가액	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상				
상용인부	○2인 이상(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피해보상을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위한 보증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				
	업자에 한한다)				

# 2.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6조)

- 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이름과 운임 등을 적은 화물위탁·수탁증 등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

위탁 · 수탁증 등을 내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시행규칙 제39조제4항)
-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화물
-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운송하는 이사화물
-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화물중 미리 운송사업자 또 는 운송가맹사업자와 6월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화물
- 라.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 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가" 및 "나"에 따른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 제4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법 제29조)
  - 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시행령 제9조의3)

- 제9조의3(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한다)
  - 4. 주사무소 ·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 5.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 · 해지
- 다. "가" 및 "나"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시행규칙 제41조의7 관련 [별표5])				
항 목 허 가 기 준					
허가기준대수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자본금 또는	○10억원 이상				
자산평가액					
사무실 및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최저보유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차고면적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화물자동차의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종류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운송시설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				

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법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 2.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법 제31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가. 운송약관의 변경
- 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 다.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라.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 마.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 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의 가입
- 바.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절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교육

1.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준(시행규칙 제18조의2)

- 가. 법 제8조(구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 (※ 검사항목 기술 생략)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규검사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2)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입힌 자
  -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2. 자격시험의 과목(시행규칙 제18조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다. 화물취급요령
- 라.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3.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시행규칙 제18조의6)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4개 과목 합하여 총 100점 만점의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할 이상 을 얻은 자로 한다.

## 4. 교육과목(시행규칙 제18조의7)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8시간 동안 교통안전 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다.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라. 자동차응급처치방법
- 마.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교부(시행규칙 제18조의8)

- 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교통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화물운송 종 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협회에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제출하는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교부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 2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라. 협회는 "다"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 6.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교부(시행규칙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협회(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 2) 사진 1매
- 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 2) 사진 2매

# 7.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시행규칙 제18조의10)

- 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안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 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 1)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운송사업자 본인

- 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 2)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 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 1)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경우(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라. 관할관청은 "다"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절 사업자단체

## 협회의 설립(법 제48조)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시·도지사에게 위임)

### 가. 협회의 사업(법 제49조)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7) 1) 내지 5)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 나. 연합회(법 제50조)

1)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 이 된다.

2) 연합회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48조(협회의 설립) 및 법 제49조(협회의 사업)를 준용한다.

#### 다. 공제사업(법 제51조)

- 1)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2) 운수사업자는 1)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 3) 2)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4) 1)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1)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공제사업의 내용(시행령 제11조)

- 제11조(공제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51조(구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 2. 회원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 3. 운수종사자가 회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 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 4.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4의2. 회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운송되는 적재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
  - 4의3. 회원의 화물운송주선으로 인한 적재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
  -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 한 사업
  - 6.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제7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법 제5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 양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시행령 제12조)

-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구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다.
  - 1. 특수자동차
  -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필증을 비치하고 유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8조제4항)

## 2. 유상운송의 금지(법 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있다.

#### □ 유상운송의 허가사유(시행규칙 제49조)

-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사유) 법 제56조(구법 제39조)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천재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2. 사업용 화물자동차 ·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 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3.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 제8절 보칙 및 벌칙

# 1. 운수종사자의 교육(법 제59조)

-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시·도지사는 "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운수종사자 교육(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59조(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3. 자동차응급처치방법
- 4.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시행 1월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법 제60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 3. 보고와 검사(법 제61조)

-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화물자 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3조제5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제 24조제4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또는 제29조제3항(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 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그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8조)

-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 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 라.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 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 6. 과징금 부과기준(시행규칙 별표 3)

				처분내	용(단	위:만원)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화물자	동차운	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
			일반	개별	용달	가맹사업
1.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 주차를 한 때.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10	10	20
19	H2.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 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 차한 때		20	10	10	20
2.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때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20	10	_	20
3.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환급을 받고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때		10	5	_	10
4.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시행규칙 제21조제5호	60	30	30	60

			처분내용(단위:만원)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			
			일반	개별	용달	가맹사업
5.	사업용화물자동차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소 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 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명칭 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10	5	5	10
6.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 - ' '	20	10	10	10
7.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 때		20	10	10	20
8.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 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 하고 운행하게 한 때		10	5	5	10
9.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가 불량한 때	시행규칙 제21조제12호	10	5	5	10
10	.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 또 는 동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운 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 동차를 당해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 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운 행하게 한 때		20	10	10	20

# 제4장 자동차관리법

# 제1절 총칙

## 1. 목적(법 제1조)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 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

## 2. 정의(법 제2조)

가.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시행령 제2조)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시행령 제3조)
  -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3. 자동차의 종류(법 제3조)

- 가.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 자동차의 종별구분(시행규칙 제2조)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승용자동차 : (이하 생략)
- 2. 승합자동차 : (이하 생략)
-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 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 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 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5. 이륜자동차 : (이하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1~52p 참조)

# 제2절 자동차의 등록

## 1. 등록(법 제5조)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10조)

가.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법 제8조제3항 본문 및 법 제12 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

- ※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50만원(시행령 별표2)
-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과태료 30만원(시행령 별표2)
- 라.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 한 때: 과태료 5만원(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시행령 별표2)

### 3. 변경등록(법 제11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의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①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인 때: 과태료 2만원 ②신청 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1만원 ③ 과태료 최고한도액: 30만원(시행령 별표2)

## 4. 이전등록(법 제12조)

-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자동차의 이전등록사유(매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의 이전등록신 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①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과태료 10만원 ②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③과태료 최고한도액: 50만원(시행령 별표2)

-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가"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가"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라. "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 5. 말소등록(법 제13조)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 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 및 "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 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 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 나.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마.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 이 된 경우
  - ※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가' 내지 '마'의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①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과태료 5만원 ②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③과태료 최고한도액 50만원(시행령 별표2)
- 바. 수출하는 경우
- 사.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 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아.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 1.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가 자동 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3. 자동차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6.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법 제18조)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2)

## 7. 임시운행

- 가. 임시운행허가기간(시행령 제7조제2항)
  - 1)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 3)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 나. 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시행규칙 제28조)
  - 1) 운행정지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 정기점검 또는 자동차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 2) 임시운행대상 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 동차가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 제3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29조, 시행령 제8조)
  - 가.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의 구조	①길이·너비 및 높이 ②최저지상고 ③총중량 ④중량분포 ⑤최대안전경사각도 ⑥최소회전반경 ⑦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자동차의 장치	①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②주행장치 ③조종장치 ④ 조향장치 ⑤제동장치 ⑥완충장치 ⑦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⑧차체 및 차대 ⑨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⑩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⑪ 창유리 ⑫소음방지장치 ⑬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⑭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⑤경음기 및 경보장치 ⑥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⑪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⑱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⑲소화기 및 방화장치 ⑳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등

- 나.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2.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법 제34조, 시행령 제19조4항, 시행규칙 제78조)
  - 가.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 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다. 구조변경검사 신청서류
    - 1) 자동차등록증
    - 2) 구조・장치 변경승인서
    - 3) 변경전 · 후의 주요제원대비표
    - 4) 변경전 · 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6)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 제4절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1.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법 제36조)

가.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소유자는 차령이 5년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 90일)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 화물자동차 정기점검유효기간의 조정 등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사업용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점검은 연장된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2.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된 경우
-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신고를 한 경우
-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나. 자동차소유자는 "가"항에 따른 점검결과 당해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 ※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①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 내인 때: 과태료 1만원 ②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③과태료 최고한도액: 30만원(시행령 별표2)

### 2. 점검 및 정비명령등(법 제37조)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수 있다.
  -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 3)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

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 제5절 자동차의 검사

### 1. 자동차검사

자동차소유자(아래 "가"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제43조)

가.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 구조변경검사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 에 실시하는 검사

라.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교통안전공단이 대행, 정기검사(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행)

### 2.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시행규칙 별표 15의2)

차종	비사업용승용 및 피견인	사업용 승 용	경형·소형의 승합 및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기타 자동차	
차령	자동차	자동차	화물자동차	2년이하	2년경과	5년이하	5년경과
유효 기간	2년 (최초4년)	1년 (최초2년)	1년	1년	6월	1년	6월

※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검사(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 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법 제43조제4항)

####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 3.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 3.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3조의2, 시행령 별표2)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나.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성	적용 차령				검사 유효기간			
人りコモ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3	초과인	자동차	2년		
승용자동차	사업용	차령이	2년 3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비사업용	차령이	3년 3	초과인	자동차	1년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차령이	2년 3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3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3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3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 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다.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자동차종합검사기간 등
  -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 2) 자동차종합검사기간 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3) 자동차종합검사 전 또는 후에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 차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5) 자동차종합검사기간: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 6) 자동차 소유권 변동 또는 사용본거지 변동 등의 사유로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재검사 : 자동차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 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자동차종합검사대 행자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종합검사 결 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종합검사기간 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자동차종합검사기간 만료후 10일까지
  - 2) 자동차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 1.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장착)에 따라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마.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사유 및 제출서류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 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통서류(자동차등록증)
  - 가)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나)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된 경우만 해당),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처분서 (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폐지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군수 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섬 지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육지와 연결된 섬과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 바.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 시·도지사는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 1)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 2) 자동차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 3)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 ※ 자동차정기검사나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①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인 때: 과태료 2만원 ②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1만원 ③과태료 최고한도 액: 30만원(시행령 별표2)
    - 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 이 기간내에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 료일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기간만료일과는 다른 의미이며, 과태료 부과는 기간 만료일부터 계산됨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과 배출가스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2009.3.30)"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 제5장 도로법

# 제1절 총칙

### 1. 목적(법 제1조)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도로의 정의(법 제2조)

- 가.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 ※ 도로법 제8조의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
- 나. "가"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 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 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시행령 제3조)
    - 삭도
    -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 ※ 도로의 부속물 :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법 제2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조)
    - 도로 원표,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적으로 관리하는 도로 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것
  - ·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 ·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 ·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 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 · 공동구
  - ㆍ지하도 또는 육교
  - ·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 · 교통량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 ·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 3. 도로의 종류와 등급(법 제8조)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 가. 고속국도

- 나. 일반국도 : 중요 도시,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며, 고속 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 다.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특별시,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라. 지방도: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마. 시도(市道) :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는 특별자 치도지사)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바. 군도(郡道):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관할 군수 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사. 구도(區道):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자치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제2절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법 제45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도로를 손궤(損潰)하는 행위
- 나.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다.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고속국도는 제외)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치거나 교통 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

### 2. 차량의 운행제한(법 제59조)

가.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차량의 운행제한(시행령 제55조)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 (이하 생략)

- ②도로 관리청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3. 도로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5조제4항)
  - ①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②운행구간 및 그 총길이 ③차량의 제원

④운행기간

⑤운행목적

⑥운행방법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4조제1항)

①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②차량 중량표 ③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 나. 도로 관리청은 "가"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 (건설기계의 조종사 포함)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다. 도로 관리청은 "가"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라. 도로 관리청은 "나"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 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차량 동승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8조제1항)

#### 3.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법 제 60조)

- 가.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도로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7조제 9호내지제10호)

## 4.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법 제61조)

가. 도로 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

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 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 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 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 가 있어야 한다.
- 다. "가"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들어야 한다.
- 라. 도로 관리청은 "가"에 따른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공고(시행령 제56조)

제56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도로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의 방법

4. 지정의 이유

- 5. 해당 구간에 일반교통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지
- 6. 기타 필요한 사항

#### 5.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법 제62조)

- 가.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 나. 도로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도로 관리청은 "가"항을 위반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교 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97조제11호)

# 제6장 대기환경보전법

# 제1절 총칙

### 1. 목적(법 제1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의(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
- 다.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
- 라.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
- 마.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 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
- 바.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
- 사.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 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아.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 자.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

# 제2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 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법 제57조)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위반한 운전자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15)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3,500cc미만			
1)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2)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이상 초	20만원	20만원	20만원
과한 자동차 소유자			
2.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3,500cc 이상			
7,000cc 미만 자동차			
1)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이상	20만원	20만원	20만원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2)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이상 초	25만원	25만원	25만원
과한 자동차 소유자			
3.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7,000cc 이상			
10,000cc 미만 자동차			
1)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이상	25만원	25만원	25만원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2)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이상 초	35만원	35만원	35만원
과한 자동차 소유자			
4.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0cc 이상			
인 자동차			
1)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이상	35만원	35만원	35만원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2)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이상 초	50만원	50만원	50만원
과한 자동차 소유자			

## ※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경유사용 자동차)(시행규칙 별표21)

구 분	자동차 제작일자	매연기준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	1995.12.31 이전	40% 이하
	1996.1.1~2000.12.31	35% 이하
	2001.1.1~2002.6.30	30% 이하
	2002.7.1 이후	25% 이하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992.12.31 이전	40% 이하
	1993.1.1~1995.12.31	35% 이하
	1996.1.1~2000.12.31	30% 이하
	2001.1.1~2002.6.30	25% 이하
	2002.7.1 이후	20% 이하

## 2.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법 제58조)

- 가.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2조)
-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 3. "가"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 4. "가"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3. 공회전의 제한(법 제59조)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 1차 위반(과태료 5만원), 2차 위반(과태료 5만원), 3차 이상 위반(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15)

## 4. 운행차의 수시점검(법 제61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 나. 자동차운행자는 "가"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2조)
- 다. "가"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시행규칙 제83조)

- 제8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시행규칙 제84조)

- 제84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